

##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-1-5 사증 발급 기준

(2025. 11. 10., 주베트남대사관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국 절차 등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재외공관에서 <b>F-1-5(방문동거, 90일) 사증</b> 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청 자격<br>(한국측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한국인 배우자, 국적·영주자격 취득한 결혼이민자<br>※ 단, 한부모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국적·영주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초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청 사유<br>(자녀의 양육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) |            | ㉠ 원칙 : 자녀가 <b>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</b> 초청 가능<br>㉡ 한부모 및 다자녀(3명) 가정 : 자녀가 <b>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</b> 초청 가능<br>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예시 : 2025년 현재, 사증 신청일 기준<br/>             1. 자녀가 2016년생(한부모·다자녀 가정은 2013년생)인 경우 2025년 9월까지만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음<br/>             2. 자녀가 2015년생(한부모·다자녀 가정은 2012년생)인 경우 초청할 수 없음           </div> ㉢ 인도적 사유 : <b>초청인 부부 또는 자녀에게 중증 질환·중증 장애</b> 가 있는 경우 |
| 초청 인원<br>(체류 가능 인원)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결혼이민자의 <b>부모 : 2명</b><br>○ 결혼이민자의 <b>부모 외 가족 : 1명</b><br>※ 다른 가족을 초청했다면 부 또는 모 초청 불가, 부 또는 모를 초청했다면 다른 가족 초청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청 횟수<br>(첫째 자녀부터 우선 적용)      |            | ㉠ 원칙 : <b>자녀 1명당 2회</b><br>※ 부모 모두를 초청한 경우 2회 초청한 것으로 간주<br>㉡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/ ㉢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: 횟수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피초청 자격<br>(베트남측)              | 원칙         | ○ 결혼이민자의 <b>부 또는 모</b> (동시 초청·체류 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외         | ○ 결혼이민자의 <b>만 19세 이상 형제자매, 전혼관계 출생 자녀</b><br>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(단, 위의 ‘인도적 사유’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)<br/>             1.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중대 질병(암, 거동 불편 등) 또는 장애,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<b>입국이 불가한 경우</b><br/>             2. 피초청인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<br/>             3. 실질적인 양육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증 발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| 초청인        | ○ ‘초청인’이 불법고용, 허위초청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‘초청인’이 초청한 본국 가족 등이 과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5년간 초청 제한 (단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간 초청 제한)<br>○ 본국 가족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경우 초청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초청인       | ○ 신청인에게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 등 법위반 경력이 있으면 5년간 사증발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내 체류 기간의 상한                  | 자녀 연령 등 기준 | ㉠ 원칙 :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<br>㉡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: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<br>㉢ 인도적 사유 :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국일 기준     | ○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이상 기준에도 불구하고, 피초청인이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증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(F-1-5)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

### ①/② 자녀 양육지원이 목적인 경우

| 구분        | 연번 | 구비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본<br>서류  | 1  | ○ 사증발급 신청서<br>※ 여권<br>※ 여권용 사진(3.5×4.5cm) 1장<br>※ 수수료(미화 30달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2  | ○ 초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1 |
| 한국<br>서류  | 3  | ○ 신원보증서(보증기간: 입국한 날부터 3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2 |
|           | 4  | ○ 불법체류·취업 방지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3 |
|           | 5  | ○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및 기본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6  |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br><임신한 경우> 임신진단서 추가<br><재혼·입양한 경우> 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<br><한부모 가정의 경우> 자녀에 대한 친권·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,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<br><친양자의 경우>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7  | ○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8  | ○ 주민등록표 등본<br><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, 또는 실제 동거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다른 경우> 사유서 및 증빙자료 (예: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9  | ○ 자녀의 재학증명서(초·중·고등학교만 해당)<br>※ 주된 양육지원 대상 자녀 1명 것만 제출해도 무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0 | ○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1 | ○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(예: 외국인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베트남<br>서류 | 12 | ○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등본(번역 공증 불필요) - <b>BAN SAO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3 | ○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-CT07(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)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4 | ○ 신분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5 | ○ 결핵 진단서(지정 병원에서 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6 | 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호구부 등><br>○ 호구부-CT07(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br>※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(이하 같음)<br>○ 출생증명서 등본(번역 공증 불필요) - <b>BAN SAO</b><br>○ 미혼증명서(미혼인 경우)<br>○ 이혼판결문(이혼한 경우,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 포함) |     |
|           | 17 | 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진단서 등><br>○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(국립·공립병원 또는 대학·종합병원의 진단서만 인정)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<br>○ 진단서가 없는 경우는 사유서 및 소명자료<br>※ 단, 이상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- 【유의사항】**
- ① 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
  -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.
  - ③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.
  - ④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·날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
  - ⑤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.
  - ⑥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.
  - ⑦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예정

◎ 인도적 사정(중증질환·중증장애)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이 목적인 경우

| 구분        | 연번 | 구비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본<br>서류  | 1  | ○ 사증발급 신청서<br>※ 여권<br>※ 여권용 사진(3.5×4.5cm) 1장<br>※ 수수료(미화 30달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2  | ○ 초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1 |
| 한국<br>서류  | 3  | ○ 신원보증서(보증기간: 입국한 날부터 3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2 |
|           | 4  | ○ 불법체류·취업 방지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3 |
|           | 5  | ○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및 기본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6  |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br><임신한 경우> 임신진단서 추가<br><재혼·입양한 경우> 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<br><한부모 가정의 경우> 자녀에 대한 친권·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,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<br><친양자의 경우>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|     |
|           | 7  | ○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8  | ○ 주민등록표 등본<br><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, 또는 실제 동거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다른 경우> 사유서 및 증빙자료 (예: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9  | ○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0 | ○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(예: 외국인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1 | <중증질환인 경우><br>○ 진료비 영수증 : 영수증 우측 상단 또는 진단서 등에 '중증질환 (중증난치질환)' 또는 '산정특례' 사실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2 | <중증장애인 경우><br>○ 장애인증명서 : '중증장애' 또는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'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베트남<br>서류 | 13 | ○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등본(번역 공증 불필요) - <b>BAN SAO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4 | ○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- <b>CT07</b> (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)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5 | ○ 신분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6 | ○ 결핵 진단서(지정 병원에서 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17 | 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호구부 등><br>○ 호구부- <b>CT07</b> (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br>※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<br>○ 출생증명서 등본(번역 공증 불필요) - <b>BAN SAO</b>       |     |

- 【유의사항】 ① 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  
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.  
 ③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.  
 ④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·날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  
 ⑤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.  
 ⑥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.  
 ⑦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예정